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보담당 차장검사 박규형

전화 031-739-4324 / 팩스 031-739-4739

보도자료

2024. 4. 30.(화)

제 목

철원 민통선 부근 테마파크 개발 명목으로 380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 약 8,00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380억 원을 편취한 甲 회사의 회장 피고인 A를 사기 등으로 오늘(4. 30.)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B, C를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군부대 협의, 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코인 판매 대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코인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 사건은 검찰에서 '21. 3. 수사에 착수하였고, A에 대한 기소에 이르기까지 주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피하였으나, 계좌추적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다단계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약 2년 5개월 동안 도주한 A 등 관련자 전부를 기소하여 엄단하였음

▲ '22. 10. 24. 총괄이사 B 등 핵심 공범 3명을 먼저 기소하고, 검찰수사단계에서 도주한 A와 D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10회 이상의 영장 집행, 잠복 등) D('24. 1.), A('24. 4.)를 차례로 검거하고, A, D를 도피하게 한 공범에 대해서는 범인도피로 인지

-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음

1

사건관계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순번	피고인	지위(범행당시)	처분
1	A(남, 63세)	甲사 회장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24. 4. 30.)
2	B(남, 50세)	甲사 총괄이사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24. 4. 30.) ※ '22. 10. 24. 본건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3	C(여, 32세)	D 지인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24. 4. 30.)
4	D(여, 32세)	甲사 사내이사, A 수양딸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24. 2. 6.)
5	E(남, 59세)	甲사 영남권 총괄이사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22. 10. 24.)
6	F(남, 71세)	甲사 서울지사장	방문판매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22. 10. 24.)

② 공소사실 요지

- (A, B, D, E) '19. 6. ~ '21. 9. 민통선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군 협력 및 개발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철원 주파리 임야에 동남아 13개국 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 코인을 구입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380억 원 편취 [사기]
- (A, B, D, E, F) 위 범행 기간 동안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 합계 약 380억 원 모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등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A, D) '21. 8. ~ 9. 실적이 좋은 지사에는 추가 수당 및 전원주택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甲사의 지사장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코인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100만 원 편취 [사기]

- (A) '20. 2. ~7. 보관하고 있던 코인 투자금 중 약 16억 원을 손세정제 사업 등 지인의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 '20. 11. ~ '21. 6. 지인 생활비로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B) '21. 12. ~'22. 5. 도주한 A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등 제공 [범인도피]
- (C) '23. 5. ~6. 도주한 D에게 오피스텔 임차 명의, 휴대전화 등 제공 [범인도피]

2 수사 경과

- '21. 3. 16. 당청 수사과, 수사 착수(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분석)
- '21. 11. 10. 甲사 본사 및 대구지사 압수수색
- '22. 10. 24. B·E 사기·방문판매법위반·유사수신행위법위반 구속 기소,
F 방문판매법위반·유사수신행위법위반 불구속 기소
(A·D는 도주하여 기소중지)
- '23. 11. 14. 대법원, B·E·F에 대한 유죄 확정
※ B(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E(징역 6년), F(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24. 1. 19. 당청 수사과, 하남시 소재 은신처에서 D 체포
- 총 13회에 걸친 계좌영장,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D의 차명폰과 은신처를 확인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수회 잠복하여 검거
- '24. 2. 6. D 구속 기소
- '24. 4. 4. 당청 수사과, 대구 소재 은신처에서 A 체포
- 총 17회에 걸친 계좌영장,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A의 차명폰과 은신처를 확인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3일간 잠복하여 검거
- '24. 4. 30. A 구속 기소, B·C(범인도피) 각 불구속 기소

▶ 사건 송치 후 A 3회 조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출장 조사, C 조사, 참고인 3명 조사, A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사건 기록 검토 등 추가 수사 진행

① 실제 없는 개발 사업, 화려한 거짓 홍보를 통해 380억 원 편취

- A 일당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구성, 철원 민통선 부근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할 예정이니 코인 매수 형식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약 8,000여 명을 상대로 약 380억 원을 편취함
 - 토지 개발 허가 신청,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회장 A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명함, 양해각서 체결, 언론보도 내용 등 대외 홍보와 관련된 것이 전부였음
 - 최초 발행한 코인이 고의적인 가액 부풀리기로 인해 매수세가 약해지자 다른 코인을 재발행하였고, 나중에는 또 다른 코인까지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음
 -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도 하였으나, 모두 거짓이었음

② 자전거래 방식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한 수법 확인

-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계속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코인을 매수하고, 매수량을 부풀리는 등 코인 가액 조작에 사용함
 - A, B는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인 약 200억 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초 발행 코인의 경우 '19. 11. ~ '20. 10. 868.7%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함
- A 일당은 법인 직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위 '자전거래'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본건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하여 기대감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였음
 - 사무실에서 명의가 다른 20여 대의 코인 거래용 휴대전화가 발견됨

③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유치

- A 일당은 본사 외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광주, 원주 등에 지사를 두고, 주범 A 등이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방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음
- A는 2011년에도 본건 법인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시 활동했던 조직과 인물들이 본건에도 가담하였음

④ 모집한 투자금을 회장 A의 개인 용도로 사용

- 회장 A는 테마파크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닌 지인들의 사업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지인 ㄱ○○의 손세정제 사업 투자로 약 5억 원을, 지인 ㄴ○○의 가짜 석유 판매 사업 투자로 약 1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 지인 ㄷ○○의 생활비 명목으로 약 2,40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기도 하였음

⑤ 공범들의 범인도피 등 여죄 규명

- B가 A의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등을 제공하고, C가 D의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 임차 명의 및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 확인 등 공범에 대한 범인도피 범행을 추가 인지함

4

향후 계획

- 주범 A가 2011년에도 甲 법인을 이용해 테마파크 개발을 내용으로 한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 오로지 회사가 다단계 사기 목적으로 운용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임**

▶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